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83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 10. 1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83호

「약사법」 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약사법」 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다.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장 등 관련 전문가의 출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 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07,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호

「약사법」 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뉴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5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안건 중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 중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협의회 의장은 안건에 따

라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괄조정 분과위원회
2. 학교보건 분과위원회
3. 재난관리 분과위원회
4. 질병관리 분과위원회
5. 긴급환자치료 분과위원회
6. 산업보건 분과위원회
7. 보훈 분과위원회
8. 개발(제조) 분과위원회
9. 방사선방호 분과위원회

(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제2조제4항의 실무협의회 위원 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지정·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심의 등) (1)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2)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재심의 또는 재의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가 심의 또는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6제6항에 따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
2.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법」 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의약품 수급 보니파잉 센터의 장
3. 관련 공무원,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자

제7조(감사) ①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8에 따른 협의회의 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의 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감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약사법」 제83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4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의견수렴, 협의회 안건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고시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운령·예고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